# 검 토 보 고 서

## ■ 조례명

○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# ■ 주요내용

○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

| 구분 \ 위원회별 | 의회운영위원회 | 총무위원회 | 산업·건설위원회 |
|---|---|---|---|
| 현 행 | 5 | 7 | 6 |
| 변 경 | 5 | 6(△1) | 6 |

## ■ 개정사유

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(법률 제5537)이 '98. 4.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3조에 의거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## ■ 검토결과 (의견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문필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써, 지방자치법 제50조(위원회 설치)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(상임위원회 설치기준)에 의거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정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, 이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o 제2조 제2호 "총무위원회 7명" 을 "총무위원회 6명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'98. 7. 1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조표

| 현 행 | 변 경 |
| --- | --- |
|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. |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현행과 같음 |
| 1. 의회 운영위원회 5 명 | 1. 현행과 같음 |
| 2. 총무위원회 7명 | 2. 총무위원회 6명 |
| 3. 산업·건설위원회 6명 | 3. 현행과 같음 |